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부제출

(의안번호 제2011호, 제2077호, 제2088호, 제2093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개 요	1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2.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
3.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3
4.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4
II. 제안 배경 및 주요내용 검토	5
1.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 등	5
III. 개별법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11
1. 의료기기법(제조업자등의 지위승계 등)	11
※ 참고자료	17
1.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17

I. 개 요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부
- (2) 제 안 일 : 2024. 7. 19.
- (3) 회 부 일 : 2024. 7. 2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축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부
- (2) 제 안 일 : 2024. 7. 22.
- (3) 회 부 일 : 2024.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부
- (2) 제 안 일 : 2024. 7. 22.
- (3) 회 부 일 : 2024.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 등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4.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부
- (2) 제 안 일 : 2024. 7. 22.
- (3) 회 부 일 : 2024.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보호사 등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Ⅱ. 제안 배경 및 주요내용 검토

1.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 등

□ 정부가 제출한 3개의 일괄 개정을 위한 제정법률안과 1개의 일부 개정법률안은 복지위 소관 15개 법률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조문을 분리 신설하려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보충의견(2020. 4. 23. 선고, 2019헌바118)¹⁾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

< (예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2. ----- 실행----- ---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1) <헌법재판소(2019헌바118) 보충의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위해서는,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보다 더 알기 쉽도록 입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분리하여 규정)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8조 제4호²⁾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하여 명확성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이므로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형의 선고’는 있는 것”임을 근거로 “동 조항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됨이 명확하다”고 판시하였음³⁾.

□ 또한, 대법원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형의 시효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될 때까지 사이의 자, 일반사면 또는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기까지 사이의 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기까지 사이의 자 등이 포함된다”고

2) 「의료법」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4. 7. 법률 제17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 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9헌바118, 2019헌바171(병합), 2019헌바17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의료법 제8조 제4호 등 위헌소원, 의료법 제8조 제4호 위헌소원,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해석하였음⁴⁾.

□ 따라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라는 규정이 실형의 선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거나 축소 해석될 여지는 없는 것이며,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됨이 명확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위 헌법소원에서 일부 재판관은 “입법자는 수범자인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위해 심판대상 조항이 형의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더 알기 쉽도록 입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형과 집행유예 선고를 구분하여 형의 선고 관련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7개 부처 소관 26개 법률을 일괄적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제21대 국회에 5개의 법률안⁵⁾을 제출하였음.

- 우리 위원회 소관은 총 15건의 법률에 대한 개정사항이 1개 법률안으로 제출⁶⁾되었으나, 동 법률안은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 이에 정부가 제출한 우리 위원회 소관 3개의 일괄 개정을 위한 제정법률안과 1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1대국회에서 제출되었던

4)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8042 판결[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5) 일괄개정 방식 5건(환노위 1건, 외통위 1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1건, 보건복지위 1건, 여성가족위 1건)

6)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13973호, 정부, 2021.12.17.)

것과 동일하게 결격사유 중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분리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① 법률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② 「국가공무원법」, 「관세사법」⁷⁾ 등 실형·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구분하여 결격사유를 정하는 입법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우리 위원회 소관 개별법 정비 대상 현황 >

법안	정비대상 법률	소관부처	법률안 형식
1	사회복지사업법	복지부	일괄개정
2	약사법		
3	의료법		
4	노인복지법	복지부	일괄개정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6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7	장애인복지법		
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식약처	일괄개정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1	의료기기법		
1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	체외진단의료기기법		
14	화장품법	식약처	일부개정
15	축산물 위생관리법		

7)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2. (생략)

3. 급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급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급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8. (생략)

「관세사법」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다.

1.~3. (생략)

4. 급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급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2. 급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7. (생략)

-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집행이 끝난 경우에 포함) 한편, 동 법률안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형의 집행이 끝난 경우에 포함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형법」 제76조제1항⁸⁾에서는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가석방 기간이 예정대로 종료되면 남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현행법상 형의 집행이 끝난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형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집행이 끝난 경우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결격사유 관련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개정) 또한, 동 법률안들은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데,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에는 ①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어 형의 집행이 면제된 사람⁹⁾, ② 재판확정 후 시효가 완성되어 그 집행이 면제된 사람¹⁰⁾, ③ 일반사면 또는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8) 「형법」 제76조(가석방의 효과) ①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9)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10) 「형법」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사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사람 등이 포함됨.¹¹⁾

□ 그런데, 일반 국민의 경우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즉, 다시 말하면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법문의 표현으로는 명확히 알기 어렵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중 ③의 일반사면 또는 특별사면¹²⁾에 의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한 사람은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므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바,

동 법률안들은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개정함으로써 ‘집행이 면제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1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8042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형의 시효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될 때까지의 사이의 자, 일반사면 또는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기까지의 사이의 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되기까지 사이의 자 등이 포함됨

12) 「사면법」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Ⅲ. 개별법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1. 의료기기법(제조업자등의 지위승계 등)

□ 개정안은 의료기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등의 허가, 신고, 지위 승계 등의 결격사유로 「의료기기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① 의료기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①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u>	<u>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u>
<u><신설></u>	<u>4의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u>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①·② (생략)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는 제	③ -----

6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 제12조 및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는 “판매 또는 임대”로, “제조업허가”는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로, “제조업자”는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 각각 본다.

④ ~ ⑦ (생략)

법률 제19608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① · ② (생략)

③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2호(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제4호·제5호의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기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로, “제조업허가”는 “신고의 수리”로 각각 본다.

④ · ⑤ (생략)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①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인증·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수입·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인증·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

-----제4호 · 제4호의2-----
-----.

④ ~ ⑦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608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제4호 · 제4호의2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① -----

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판매업자와 임대업자인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다만, 제47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6개월 이내에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2. ~ 25. (생략)

② ~ ⑤ (생략)

법률 제19608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인증·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수입·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인증·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판매업자, 임대업자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인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인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

1. -----

-----제4호·
제4호의2 -----
-----.

-----.

1의2. ~ 2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608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① -----

-----.

1. -----

· 피한정후견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제47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6개월 이내에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2. ~ 25. (생략)

② ~ ⑤ (생략)

제47조(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 등) ① 제조업자등이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제조업자등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 제6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③ (생략)

법률 제19608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 등)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지위를

---제4호· 제4호의2-----
-----.

-----.

1의2. ~ 2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7조(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
-----제4호· 제4호의2-----

②·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608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 등) ①

-----.

승계한다. 다만,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3.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제6조제1항제2호(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③ (생략)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제4호의2 ----- ②·③ (현행과 같음)
---	--

□ 법률 제19608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르면,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되,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①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수리업자인 경우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②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인 경우는 제6조제1항제2호·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③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인 경우는 제6조제1항제2호(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인 경우로 한정)·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결격사유 현황 >

구 분	지위승계 결격사유
제47조제1항제1호 (제조업자, 수입업자, 수리업자)	제6조제1항 각 호 ¹³⁾ 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47조제1항제2호 (판매업자, 임대업자)	제6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제47조제1항제3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제6조제1항제2호(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한정), 제4호 , 제5호

□ 그런데, 개정안 제47조제1항제3호에서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지위 승계의 결격사유를 ‘제6조제1항제2호 ·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제6조제1항제2호 · **제4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제6조제1항제4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제4호)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제4호의2)로 구분하여 규정함에 따라, 제47조제1항제3호의 경우도 제4호 및 제4호의2를 모두 결격사유에 포함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93

- 13) 「의료기기법」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① 의료기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제조업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제조업허가가 취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조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참고】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생략) 2. 금고 이상의 <u>형</u>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u><신설></u> 3. ~ 5. (생략)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 ----- -----. 1. (현행과 같음) 2. ----- <u>실형</u> ----- --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2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 5. (현행과 같음)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개정안
제5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 3. (생략) 4. 「약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료법」·「형법」 제347조(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u><신 설></u> 5. (생략) 제79조(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5조(결격 사유) ----- ----- -----. 1. ~ 3. (현행과 같음) 4. 이 법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 ----- ----- 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4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현행과 같음) 제79조(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①----- ----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임원) ① ~ ③ (생략)	제48조의2(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4. <u>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신설>	5. <u>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u>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개정안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 ~ 3. (생략) 4. <u>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u> <u><신설></u> 5. · 6. (생략)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 ----- -----. 1. ~ 3. (현행과 같음) 4. <u>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u> <u>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u> 5. · 6. (현행과 같음)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개정안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적십자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2. (생략)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u>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u><신설></u> 4. (생략)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 ----- -----. 1. 2. (현행과 같음) 3. <u>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3의2. <u>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u> 4. (현행과 같음)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개정안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공학사가 될 수 없다. 1. ~ 3. (생략) 4. 이 법이나 「형법」 제234조·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신설>	제16조(결격사유) ----- -----. 1. ~ 3. (현행과 같음) 4. -----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5. 제4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개정안
제74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74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이 법이나 「형법」 제234조·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 -----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 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신설>	5. 제4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개정안
제29조(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다. 1. ~ 3. (생략) 4. <u>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u> <u><신설></u> 5. ~ 7. (생략)	제29조(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 ----- -----. 1. ~ 3. (현행과 같음) 4. <u>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u> 4의2. <u>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u> 5. ~ 7. (현행과 같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개정안
제18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다. 1. (생략) 2. 이 법이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u>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u>	제18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 --- ----- ----- -. 1. (현행과 같음) 2. ----- ----- --- <u>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u>

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가. ~ 거. (생략)

<신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신설>

제19조(정신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은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후단 신설>

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가. ~ 거. (현행과 같음)

2의2. 이 법이나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

-----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4. 제3호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19조(정신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그 사람이 대

1. 2. (생략) ③ ~ ⑦ (생략) 제22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은 정신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후단 신설> 1. 2. (생략) ④ ~ ⑦ (생략)	<u>표자로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u> 1. 2.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2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정신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u> 1. 2.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개정안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재배자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2. (생략)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2. (현행과 같음)

3. 「약사법」·「의료법」·「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밖에 마약류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④ (생략)	3. 이 법이나 「약사법」----- ----- 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현행과 같음)
---	---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개정안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① 의료기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 3. (생략)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신 설>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4의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illegible]

1. -----

----- 제4호 .
제4호의2 -----
----- .

----- .

1의2. ~ 2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608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① -----

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인증·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수입·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인증·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판매업자, 임대업자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인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인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제47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6개월 이내에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2. ~ 25. (생략)

② ~ ⑤ (생략)

제47조(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 등) ①
제조업자등이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illegible]

1. -----

제4호 · 제4호의2
-----.

-----.

1의2. ~ 2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7조(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 등) ①

[illegible]

1. (현행과 같음)
2. -----
-----제4호 · 제4호의2-----

② · 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608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 등) ①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제6조제1항 제2호(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경우로 한정한다)·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3. ----- ----- -----제4호의2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개정안
제23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허가 등) ① ~ ⑤ (생략)	제23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허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이나 위탁제조판매업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⑥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이 법 및 「약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료법」·「형법」 제347조(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u>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u>	4. ----- ----- ----- ----- ----- ----- ----- ----- ----- ----- 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任)한 경우는 제외한다. 5. ~ 14. (생략) ③ (생략)	-----. 5. ~ 1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

< 제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개정안
제5조(제조업의 허가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 3. (생략) 4. 이 법 또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u><신설></u> 5. (생략) ③ ~ ⑪ (생략)	제5조(제조업의 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u> <u>4의2. 이 법 또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u> 5. (현행과 같음) ③ ~ ⑪ (현행과 같음)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개정안
제3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이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는 화장품제조업만 해당한다.	제3조의3(결격사유)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이 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 ----- ----- <u>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u>
<신설>	4의2. 이 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제3조의5(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될 수 없다.	제3조의5(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결격사유)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이 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	4. ----- ----- ----- <u>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u>

<u>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u> <u><신 설></u> 5. (생 략) 제3조의8(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의 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2. <u>제3조의5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3. (생 략)	<u>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u> <u>4의2. 이 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u> 5. (현행과 같음) 제3조의8(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의 취소) ----- ----- ----- -----. 1. (현행과 같음) 2. <u>제3조의5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u>----- 3. (현행과 같음)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영업의 허가) ①·② (생 략)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u>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이 법을 위</u>	제22조(영업의 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이 법을</u>

<u>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u> <u><신 설></u> 6. ~ 10. (생략) ④ ~ ⑧ (생략)	<u>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행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u> <u>5의2.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u> 6. ~ 10.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	--